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61
----------	--------

제안일자 : 2015. 12. 18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1. 수정이유

- 범죄예방 디자인 대상을 건축물과 도시공간으로 구분하여 관련 계획 및 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함.

## 2. 수정 주요내용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기본계획 또는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제1항),
- 도시계획위원회의 근거를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하며(안 제7조제2항),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 및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는 도시공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토록 하며(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 안 제11조 사무위탁 규정과 안 제13조 시행규칙 규정은 각각 삭제함.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후단 중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를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기본계획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하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제7조”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후단 중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를 “건축위원회 및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로 한다.

안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건축위원회 : 건축물에 대한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 도시공간에 대한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및 안 제13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시민디자인 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u>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u>에 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p> <p>〈신 설〉</p>	<p>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 건축위원회 및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p> <p>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p> <p>1. 건축위원회 : 건축물에 대한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p> <p>2.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 도시공간에 대한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p>
<p>제11조(사무의 위탁)(생략)</p>	<p>〈삭 제〉</p>
<p>제12조(교육 및 홍보)(생략)</p>	<p>제11조(교육 및 홍보)(제정안과 같음)</p>
<p>제13조(시행규칙)(생략)</p>	<p>〈삭 제〉</p>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공기관, 자치구 및 기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기본계획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3. 우범지역 및 위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및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건축위원회 : 건축물에 대한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 도시공간에 대한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